20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

※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<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>

◈ 아동학대 예방교육(보건복지부 제공)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2조 *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(동영상)를 탑재하여 진행된 교육임 (아동권리보장원 제공)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 (1 시간 이상)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제출	• 해당 지자체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5-2-① • 부모모니터링 지표 11-①

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(보건복지부 제공)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아동복지법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 *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(동영상)를 탑재하여 진행된 교육임 (아동권리보장원 제공)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 (1 시간 이상)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
◈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(지원요청 및 신고)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
교육주기	• 연 1 회 (1 시간 이상)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제출	• 해당 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전년도 교육실시결과를 제출 *매년 1/1 ~12/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자치구청 제출

◈ **아동 성폭력 예방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 (※신규임용 시 임용 후 2 개월 이내 교육 실시)
근거	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•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영역3(건강 • 안전) 3-5-2-①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 (1 시간 이상)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제출	•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(shp.mogef.go.kr) *매년 1/1 ~12/31까지 실시한 실시결과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여성 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(https://shp.mogef.go.kr)에 등록 필수

◈ **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**

대상	• 사업주 및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
◈ **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 (※상시근로자 10 인 이상 사업장)
근거	•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및 동법 제93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
◈ **개인정보 보호교육 (CCTV 의무화)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 •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
근거	•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 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
교육주기	• 연 1 회 (1 시간 이상)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
◈ **교사인성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 23 조의 2 • 인성교육진흥법 17조, 동법 시행령 제 14조(교원의 연수 등)
교육주기	• 연 1 회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 4(교직원) 4-3-2

◈ **장애인식개선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장애인복지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제출	•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(https://www.able-edu.or.kr/intro.do) 추진실적 등록(교육 실시 후 30 일 이내)

◈ **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•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,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를 하여야 함. •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,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,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함.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교육기관

◈ **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제 6항 및 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
교육주기	• 연 1 회(1시간)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
◈ **어린이집 안전교육(응급처치실습 포함)**

대상	• 보육교직원
근거	• 어린이집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(주무부처 : 행정안전부) •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*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**매년 1월 15일까지*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.
교육주기	• 연 1회(4시간 이상) , 응급처치 실습(2시간)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* 안전교육 : 실습(2시간) + 이론(2시간)
교육기관	•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한 , **'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'** 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.

◈ 교통안전교육

<보육교직원 안전교육>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(어린이집 운영기준 -안전관리) • 아동복지법 제31조 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5-2-①

◈ 실종·유괴의 예방 • 방지교육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(어린이집 운영기준 -안전관리) •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5-2-①

◈ 약물 오용 • 남용 예방교육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(어린이집 운영기준 - 안전관리) •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5-2-①

◈ 영유아 감염병 예방교육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(어린이집 운영기준 - 안전관리) •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3-3-④, 3-5-2-①

◈ 재난대비 안전교육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(어린이집 운영기준 -안전관리) •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5-2-①

◈ **영아돌연사 증후군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(어린이집 운영기준 -안전관리) •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
◈ **스마트폰・인터넷과의존(중독) 예방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7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 * 교육 완료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고 [문의] 스마트쉼센터(www.iapc.or.kr)

◈ **등・하원 안전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보육사업안내(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신설)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

◈ **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교육**

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근거	• 보육사업안내(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신설)
교육주기	• 연 1 회 이상
교육기관	• 이레교육원(https://ereedu.net/) 온라인교육은 어린이집 내 전달교육으로 활용 * '성교육 담당교사' 및 '원장'님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

<운영담당자 의무교육>

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

대상	• 원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(담당 보육교직원)
근거	•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 20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 조
교육주기	• 신규교육 :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, *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 개월 이내, 안전교육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 3 개월 이내 • 보수교육 : 2 년에 1회(4시간)
교육기관	• 한국생활안전연합 (www.safla.org) •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(www.ikap.co.kr) • 대한산업안전협회 (www.safety.or.kr) • 한국안전교육협회 (www.koreakid.co.kr)

◈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

대상	•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
근거	• 도로교통법 제 53 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의 2
교육주기	• 신규 안전교육 : 어린이 통학 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실시(3시간) • 정기 안전교육 : 2 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(3시간)
교육기관	• 한국도로교통공단 (www.koroad.or.kr)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4-3-③

◈ 소방안전 관리자 실무교육

대상	•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
근거	•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1조
교육주기	• 최초교육 : 선임 후 6 개월 이내 1 회 • 보수교육 :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 년마다 1 회 * 온라인(40분), 오프라인(6시간), 온/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
교육기관	• 한국소방안전협회 (www.kfsa.or.kr)
평가지표	•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4-3-①

◈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

대상	• 09.1.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
근거	•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
교육주기	• 신규교육 :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•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(4시간)
교육기관	• 국립환경인재개발원 (ehrd.me.go.kr)

◈ **식품위생교육**

대상	• 상시 근무자 50 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
근거	• 식품위생법 제41조
교육주기	• 연 1 회 (신규 6시간, 재교육 3시간)
교육기관	• 한국식품산업협회 (www.kfia.or.kr)

◈ **식품위생교육(조리사/영양사)**

대상	• 상시 근무자 50 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, 영양사
근거	• 식품위생법 제56조 1항
교육주기	• 2 년마다 6시간 *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 년도에 특별위생교육(3시간) 필수 이수
교육기관	• 한국조리사협회 (www.ikca.or.kr)

◈ **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자교육**

대상	•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(연면적 430m² 이상인 어린이집)
근거	•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
교육주기	• 신규교육 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1 회 •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 년마다 1 회
교육기관	•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(www.kepaedu.or.kr)
각종지표	• 어린이집평가제 영역 3(건강 ·안전) 3-1-1-④

◈ **어린이집 통학차량 / 동승자 교육**

대상	•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
근거	• 202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
교육주기	•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 *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(20.5.26 개정)
교육기관	• 온/오프라인 교육 선택 가능 * 교육신청 : 한국도로교통공단 (www.koroad.or.kr)